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05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제안취지	4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5
1) 결의안의 주요 내용	5
2) 양안분쟁 불개입 원칙 천명	5
3) 주한미군 역외 분쟁 동원 금지 촉구	7
4) ‘하나의 지구 구상’에 대한 검토	9
※ 참고자료	1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2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14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준형의원 등 22인
2. 제안일자 : 2025년 4월 29일
3. 회부일자 : 2025년 4월 30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양안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 일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외교·군사 정책을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양안 분쟁 동원이 곧 대한민국의 분쟁 개입으로 귀결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를 수용하여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국권 상실과 강제 병탄의 역사적 비극의 원인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120년을 맞이한 시점에, 또다시 일본이 주도하여 대만해협 등의 분쟁을 이유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지구(One Theater) 구상’이라는 위협천만한 시도를 단호히 배격·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 간 대리전 성격의 무력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

미국은 대만에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만의 군사력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대만 인근 해협에서 대만 포위 연합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중의 어느 한 편에서 구체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양안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표명하길 촉구하고 안보 관련 외교·군사 정책 추진의 범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미국에 ‘주한미군의 역외 분쟁 동원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양안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뜻을 전 세계에 명확히 전하고자 함.

또한, 을사늑약 12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결의안이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인근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도 낮춤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취지

김준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¹⁾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최근 미·중 간 경쟁으로 대만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어느 한쪽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가 ‘대한민국은 양안 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주한미군의 역외 분쟁 동원을 금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과거 강대국 간 밀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임.

1) ‘대만 유사시(有事時)’라는 표현은 언론 및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며, 여기서 ‘유사(有事)’는 외교·안보 용어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히 전쟁이나 군사 충돌이 일어난 상황’을 의미함. 따라서 ‘대만 유사시’는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됨.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전쟁 발발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전제하기보다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날짜	회담	대만문제 관련 표현	비고
2021.5.21.	한미 정상회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한미 공동성명에 첫 명시 (문재인 정부)
2022.5.21.	한미 정상회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윤석열 정부)
2023.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한미일 3국 첫 공동 언급

*표 : 외교부 홈페이지(검색어: 한미 정상 공동성명) 참조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1) 결의안의 주요 내용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원칙과 주한미군 역외 동원 금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내용
안 제1호 (한반도 평화 중심 외교·군사 정책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모든 외교·군사 정책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추진할 것을 촉구
안 제2호 (대만 유사시 불개입 원칙 선제 천명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만 유사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
안 제3호 (주한미군 역외 분쟁 동원 금지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 목적 외의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도록 촉구
안 제4호 (하나의 전구 구상 배격 및 주권 보호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주도의 '하나의 전구 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정부가 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한 외교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2) 양안분쟁 불개입 원칙 천명

과거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²⁾부터 최근까지의 사례³⁾를 살

2)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1954년 9월 3일부터 1955년 5월 1일까지 발생한 군사적 충돌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갈등이 중심이었음.('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2025.2.24.)

3) 2024년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대만은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하

펴보면, 양안 갈등은 ‘하나의 중국 원칙’⁴⁾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하여,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나 합의로 일정 부분 봉합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양안 갈등이 한반도 안정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동 결의안은 미·중의 어느 한 편에서 구체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우려, 우리 정부가 양안분쟁 불개입 원칙을 선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양안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임.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특히 군사적 충돌의 경우 우리 정부의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든 이는 분쟁의 여파를 확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함.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외교적 결정사안이므로 파장 효과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양안분쟁에 대해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고, 처음으로 중국을 ‘해외적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연례 최대 군사훈련에 ‘중국 2027년 침공’을 명시하는 등 양안(兩岸)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이 대만산 농수산물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을 압박하면서, 대만해협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출처: 「대만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 현황과 한중관계」, 이슈와 논점 제238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22.)

4) ‘하나의 중국(One-China) 원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주장하는 외교원칙으로, 세계에는 중국이 단 하나뿐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의미임.

바, 동 결의안의 선제적 천명 촉구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임.

3) 주한미군 역외 분쟁 동원 금지 촉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함)⁵⁾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동맹조약으로,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서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시 공동대응할 것을 규정⁶⁾하고 있음.

제3조는 ‘공동대응’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상은 ‘태평양 지역에서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국한됨. 따라서 대만은 어느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가 아니므로, 동 조약 제3조만으로는 한국의 자동개입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이로 인해, 동 결의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제와 직접 충돌하지 않

5)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8.8.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美 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假조인되고, 1953.10.1.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11.18. 발효됨. 동 조약은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주둔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법무/법제 > 헌정관련 법제도 > 외교관련 법제 > 한미상호방위조약)

6)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는 대만 관련 상황에서 자국의 국익과 외교적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익 우선 원칙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미국은 대만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동맹국의 협조로 연결하려 할 수 있으므로, 결의안 채택이 한미관계에 정치적·외교적 파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외 역외 분쟁 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 조약 제4조는 주한미군의 배치를 규정⁷⁾하고 있을 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역외 분쟁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별도의 협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 SOFA) 역시 주둔 시설·구역 제공, 출입국·세금·노무·형사재판권 등 법적 지위, 주둔 활동 관련 행정 사항을 규율할 뿐,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 동원 문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7)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문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한미 간 정치적·군사적 협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바, 동 결의안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사태와 같은 역외 분쟁에 동원되어, 한반도 방위 공백 및 안보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의 역외 분쟁 동원 불가’ 축구는 한반도 안보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를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정치적 과장이 불가피하므로 결의안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4) ‘하나의 전구(戰區, Theater)⁸⁾ 구상’에 대한 검토

동 결의안에서 언급한 일본 주도의 ‘하나의 전구 구상’은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과 밀접히 관련됨.⁹⁾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통합될 경우, 자

8)

* 출처 : 다수의 언론보도 참조(‘일본 ‘하나의 전구’구상, 거론조차 용납해선 안된다’, 한겨레, 2025.4.17. / ‘미국에 ‘하나의 전구’ 던진 일본의 속내, 중앙일보, 2025.4.17.)

국의 방어선인 제1열도선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일본의 구상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반도를 일본의 안보 전략 속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로,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자적 안보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주도의 전구 개념에 포섭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대리 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전략적 우려를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구상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결의안에서 말하는 ‘하나의 전구(One Theater) 구상’은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본이 대만해협을 비롯하여 동중국해를 하나의 전략적·정치적 전장(戰場)으로 묶어 대응하려는 시도를 지칭함. 여기서 사용된 ‘전구(theater)’라는 표현은 군사용어인 ‘작전 전구(theater of operations)’를 직접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차용한 비유적 표현임. 따라서 이는 실제 군사작전 범위를 정의하는 용례와는 다르며,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을 한데 묶어 광역적 전략 틀에서 관리·대응하려는 구상을 가리킴.

이러한 ‘하나의 전구 구상’은 일본이 자국 안보의 핵심적 방어선으로 인식하는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동아시아 해역의 전략적 균형과 직결되는 구상임.

·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일본 규슈·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보르네오 북부를 잇는 선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

- 9)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대만의 국가안전연구원(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주최 행사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함.(2021.12.2.헤럴드경제, ‘아베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 중국 “불장난하다 타죽는다”맹반발’)

에서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일본의 이러한 전략 구상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발효일 1954.11.18]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굳건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굳건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아래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리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은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年 10月 1일에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 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목 차

□ 주한미군지위협정(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4

조문	제목	페이지	조문	제목	페이지
제1조	정의	4	제17조	노무	70
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반환	6	제18조	외환관리	82
제3조	시설과 구역-보안조치	14	제19조	군표	84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8	제20조	군사우체국	88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20	제21조	회계절차	90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22	제22조	형사재판권	92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24	제23조	청구권	140
제8조	출입국	26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154
제9조	통관과 관세	30	제25조	보안조치	156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38	제26조	보건과 위생	158
제11조	기상업무	40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162
제12조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42	제28조	합동위원회	164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44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166
제14조	과세	48	제30조	협정의 개정	168
제15조	초청계약자	52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170
제16조	현지조달	62			

□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172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174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목차만 제시